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정과 제도설계의 한일 비교

이 수 철 일본 메이조대학 교수 (slee@meijo-u.ac.jp)

1. 서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이들의 도입을 위해 2010년부터 「지구온난화대응기본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논의한 끝에 2010년 1월에 법안이 성립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별도입법으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관련 세제개혁 관련 법안이 2011년 11월말 현재 아직 심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도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탄소세는 언제 도입될지 아직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는 시행일이 당초의 2013년 1월에서 2015년 1월로 연기되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도입의 방침을 정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향에서 안이 정리되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대응은 장기적으로는 저탄소생산기술의 혁신(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저탄소형 제품개발의 혁신(즉,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문제가 되면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에 대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일 간에 있어서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과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해서 총론찬성, 각론반대라고 하는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자가 주된 정책 목표가 되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기업 및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함께 저탄소경제 비전을 가지는 정치적 리더십과 그것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수단은 결국 정책과 정치과정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이론이나 실증 연구는 많이 있어왔으나 한일 양국의 정책과정이나 관련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고찰된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최근 한일 양국은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후변화정책과 같이 국제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큰 정책은 상호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정책의 선택과정이나 제도설계 내용의 한일 간 비교 고찰은 향후 양국의 정책연계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본고는 우선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감축 목표를 고찰한 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거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과 한국의 양국의 정책형성, 양국의 제도설계, 그리고 최근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비교 고찰한다. 본고는 아시아의 선진 공업국인 한국과 일본이 향후 저탄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설계와 관련 거버

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한 시사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2. 한일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감축 시나리오

한국의 경제는 철강, 화학 등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본에 비하면 1차에너지 총공급의 원단위는 2.8배, 그리고 CO₂ 배출 원단위는 2.7배 높다(〈표 1〉 참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3억톤(이하 CO₂ 환산 수치)이었지만 2007년에는 6.2억톤으로 103% 증가했다. 일본이 같은 기간에 8.5%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가율은 두드러지게 높다고 할 수 있다.¹⁾ 다만 한국은 1990

〈표 1〉 1차 에너지 공급과 CO₂ 배출의 한일 비교

주요지표 (2008)	한국		일본	
	실적	순위	실적	순위
GDP(billion USD)	832	12	5166	2
1차에너지 총공급(Mtoe) (원단위: Mtoe/billion USD)	227.0 (0.273)	9	495.8 (0.096)	3
1차에너지 1인당 총공급(toe)	4.67	22	3.88	31
CO ₂ 배출량(Mt) (원단위: Mt/billion USD)	501.3 (0.602)	9	1151.1 (0.223)	5
1인당 CO ₂ 배출량(t)	12.9	16	9.02	27
CO ₂ 배출의 축적량(1850~2002)	(0.8%)	23	(4.1%)	7

자료: 한일 양국의 경제백서 및 환경백서(각년도판)을 참고로 작성

1) 그런데 보다 최근의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부진과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반영해 1990년도 대비 2008년도에 1.6% 증가, 2009년도(잠정치)에 4.1% 감소하고 있음.

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배증되고 있었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배출량은 5% 증가로 증가율은 과거와 비교해 안정되어 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2008년)이며 OECD가맹국이지만 과거의 배출 책임이 적다는 이유로 비부속서 I국(non-Annex I parties)에 분류되고 있어 교토(京都)의정서의 감축 의무국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최근까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적었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된 국책으로서 천명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목표도 설정하게 되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목표는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기준으로 30%인 5억 6,900만톤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8년 6월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이 205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상대비로 60~80% 감축하는 장기 목표(소위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쿠다(福田) 비전에서는 중기 감축 목표가 없이 장기 목표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책의 실효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²⁾ 이에 후쿠다(福田) 수상을 이어받은 당시 아소타로(麻生太郎) 수상이 2008년 11월에 내각부(府)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하에 「중기목표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 감축에서 30%

감축까지의 6개의 옵션이 제시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1990년 대비 8%, 흡수원 및 교토(京都) 메커니즘의 이용은 불포함) 감축하는 중기 목표를 설정했다.³⁾ 그런데 정권교체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었던 당시의 하토야마(鳩山) 총리가 2009년 9월 유엔에서 주요국의 동참을 전제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기 목표를 발표했다.⁴⁾

[그림 1]은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에 대해서 1990년을 100으로 한 지수의 추세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므로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과의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2020년의 중기 목표인 BAU기준 30% 감축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89%나 증가한 목표이며, 온실가스의 배출이 안정되어진 2005년과 비교해도 7% 포인트 감축에 그치고 있어서 일본의 25% 감축에 비교하여 한층 더 감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한일의 기후변화정책의 전개와 배출권거래제도

가. 한일의 기후변화정책

이상과 같이 한국, 일본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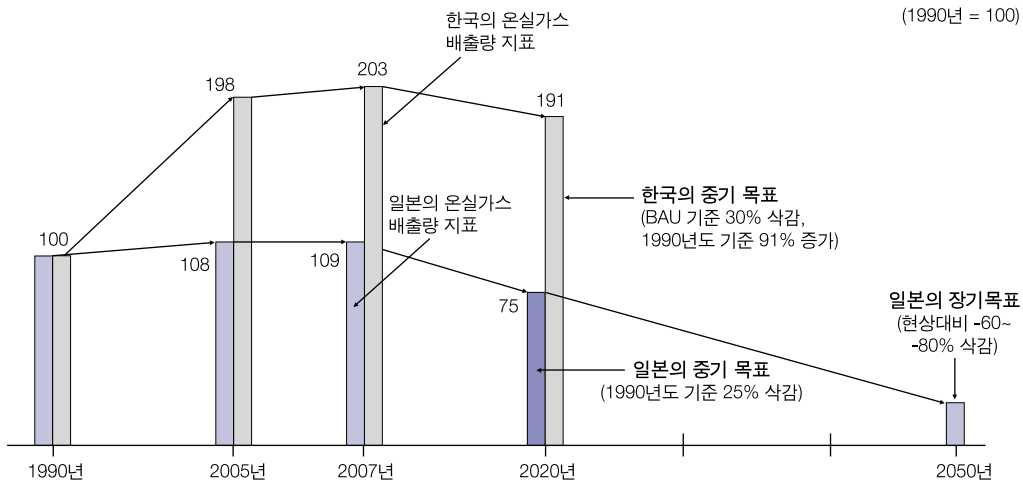
2)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2008년 6월 10일자 사설) 등에서는 후쿠다 비전에 대해 담보가 없는 장기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온난화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하였음.

3) 일본의 중기 목표 선택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중기목표검토위원회(제6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기 목표의 선택사항을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kyuu/kaisai/dai06tyuuki/06gijisidai.html>

4) 최근 3.11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일본 경단련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기 감축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1] 한일의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목표



자료: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련 자료를 기초로 작성.

목표는 결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특히 일본의 감축 목표달성에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저탄소관련 제품의 보급 등이 주로 언급되어 있으며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감축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 수단은 명시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기업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정책보다는 일본 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환경자주행동계획」에 의존해 왔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⁵⁾ 한편 일반적인 환경정책에 있어서 일본

에게 뒤져 온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 급진전하고 있으며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 제도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의 주요 환경정책의 도입 시기를 비교 고찰해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대개 10년 정도 빨랐다. 예를 들면 SOx 환경기준설정은 일본이 1969년, 한국이 1977년이며,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구인 환경청의 설립을 보면 일본이 1971년, 한국이 1980년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관련법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이 1998년인데 비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1998년에 정부 내 범부처 조직인 「온난화대책

5) 자주행동계획은 일본 경단련이 회원 기업이나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자주행동계획」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산업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0%로 억제하는 목표를 자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그 후 정부의 각 부처도 관련 기업의 행동을 체크하는 정도임.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에는 정부안으로서 「지구온난화대책법안」도 발표되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안이 되었다.⁶⁾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차에 걸친 기후변화협약대책 관련 계획이 진행되었지만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제도나 탄소세와 같은 구체적인 수단은 깊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천명하고 나서부터 기후변화 대책은 국정의 최우선과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의해 동 법률로 정해져 있었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도 2010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자는 매년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제도는 목표설정이 총량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실상 캡이 씌워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⁷⁾

〈표 2〉 주요 기후변화정책의 한일 비교

부문	한국	일본
지구온난화관련법률 (제정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0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1995년)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입법추진중)
배출권거래관련	탄소배출권거래제도법(제정 추진중) - 2015년 제도 시행계획	제도시행은 당분간 보류
탄소세관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언급되어 있으나 도입시기는 불투명	2011년도중 도입방침을 정했으나 대지진 이후 세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에너지절약관련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 에너지 대량소비 470사에 대해 1년 및 5년 단위로 에너지사용을 제한(2011년 본격 시행)	에너지절약법 - 일정 사용량 이상 사업장은 매년 원단위 기준 1% 절약,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2012년부터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로 전환	재생가능에너지지원법(2011년 3월) - RPS제도에서 전면 FIT(Feed-in Tariffs) 제도로 전환 - 일반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에서 지원
온실가스 중(장)기목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
저탄소형제품보급, 에너지절약보조금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에너지절약주택, 절전형 가전, 에코자동차 등 다양하나 최근에는 자원조달상의 문제점 다소 노정

6) 이에 관해서는 Sunjin YUN, 李秀澈·羅星仁(2010)을 참조하였음.

7) 그러나 발전사업자와 철도사업자는 원단위 등 총량 이외의 방식도 인정되어 있음.



나. 한일의 배출권거래제도

일본이 국가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환경성에서 설치된 「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도설계검토회」이다(〈표 3〉 참조). 이 검토회에서는 교토(京都)의정서에 있어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시책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가 검토되었다. 여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논점정리와 옵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2005년에 중소기업이 주된 참가 주체로 되는 「자주참가형 국내배출권거래제도(Japan's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이하, JVETS)라고 하는 참가 대상이 한정된 형식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⁸⁾

그리고 2008년 6월, 토야호(洞爺湖) 서미트를 앞두고 당시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수상이 「후쿠다(福田) 비전」의 발표 즈음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의 국내통합 시장의 시행적 실시」(이하, 국내통합 배출권제도)라고 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가 검토되었다.⁹⁾ 그러나 이 국내통합 배출권제도도 일본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반대에 직면하여 결국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이 아닌 참가는 임의, 배출 감축 목표도 총량과 원단위를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

도설계에 머물렀다.¹⁰⁾

한편 한국에서는 2009년 2월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¹¹⁾의 도입이 명시되어 제도 실시를 위해서 「배출 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은 달리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법이 2010년 11월에 입법 예고되어 그 후 재입법 예고과정을 거쳐 2011년 4월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일본은 10년 정도 가까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에 대해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1년도 안되는 논의 끝에 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¹²⁾

일본도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의무적인 수단이 결여되고 있었던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과는 달리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즉,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의 입법화를 진척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1년 정도 후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 JVETS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철(2010)을 참조.

9) 국내 통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철(2010)을 참조.

10) 예를 들어, 2008년 6월 7일에 당시의 경단련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캡 앤드 트레이드의 방식은 강제적인 캡(감축 목표)에 의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말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2008년 6월 8일 일본경제신문).

11) 법문상의 용어로는 총량 제한적 배출권거래제도로 되어 있음.

12) 지금까지 각종 환경 관련 정책은 일본이 한국에 선행해 왔지만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제도화는 한국이 일본에 선행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것은 후술하듯이 한국의 환경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표 3〉 한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추진경위 비교

연도	일본	한국
1990년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정(1998년) -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산정, 보고의 의무화	지구온난화대책법안(1999년) → 폐안
2000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에 대하여」(환경성「배출권거래제도 설계 검토회」) → 논점정리, 옵션에 관한 검토	
2002년	「온실가스의 국내배출권제도에 관하여」(환경성「배출권거래·교토 메커니즘에 관한 검토회」) →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	
2005년	「자주참가형 배출권제도(JVETS)」 실시(환경성) → 자주참가를 전제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07년		「자주적인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지식경제부)
2008년	(7월) 「저탄소사회 구축 행동계획」 국무회의 결정 → 「배출권제도의 국내 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	(9월) 「기후변화협약 종합기본대책」(국무총리실)
2009년		(2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국무회의결정 →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을 명시
201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국무회의결정 → 제13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의 배출권거래 제도의 창설규정 → 하토야마총리의 사임에 의해 폐안 (11월) 환경성「중앙환경심의회」 →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안)」에서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 제도를 제안 (12월) 배출권거래제도의 2013년도입 유보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을 명시 (1월) 「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사업」(환경부) (11월) 배출권거래제도 법안 입법예고 →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 제도를 2013년부터 실시 방침
2011년		(4월) 배출권거래제도법안의 재입법법 예고 및 국무회의 결정→실시시기의 2015년으로 연기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원안을 수정

자료: 양국 정부의 관련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제13조에 있어서는 온난화 대책의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신설이 규정되어 동 법의 시행 후 1년 이내를 목표로 하여 제도안의 성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배

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제도설계의 검토를 위해서 2010년 4월,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가 지구환경부회하에 「국내배출권거래제도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이 소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17회에 걸쳐서 검토회를 진행한 결과 후술하는 바와 같은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제안하였다.¹³⁾

그러나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 NGO나 학계 등으로부터 강한 실시 요구가 있었지만, 경단련을 비롯한 산업계의 반대와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 16일에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도입 보류 방침을 정했다. 이 때 한국은 2013년 시행과 온실가스의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법안을 입법 예고 중이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보류 방침이 전해진 후에 한국의 기존안은 산업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2010년 12월 26일에 정부와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입법 예고를 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개정하여 재입법 예고(2011년 2월 28일) 후에 국무회의 의결 (2011년 4월 12일)에 이르게 되었다.

4.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한일 비교

2010년 11월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이 되고 있다(〈표 3〉 참조). 이 제도는 제도운동을 위해서 중립적인 배출권할당위원회(20명 이상)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축 목표달성 기간은 제1기가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그

후는 5년씩으로 되어 있다. 감축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대규모 배출자(구체적인 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이며 배출권의 설정은 제1기는 9할 이상 무상, 제2기는 무상할당 비율을 별도로 정하며, 제3기부터는 전부 유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집약도와 무역 집약도를 고려한 국제 경쟁력 배려 조치는 포함되어 있으며 बैं킹, 차입, 제한적 오프셋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상과 같은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에 일본에서도 환경성을 중심으로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논의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었다. 그 안이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에 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에서 작성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안」이다. 〈표 4〉에는 그 제도안의 개요가 2010년 11월에 입법 예고된 한국의 안과 비교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다.

환경성 안에서는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기본으로 감축 목표달성 기간은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설정하고 또 2020년 이후는 5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와 제2차가 3년이 된 것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투자의 회수기간이 대체로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2020년까지의 8년은 단일기간으로서는 길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 5년이 된 것은 국제적 경향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의무감축 대상사업자는 대규모 배출 사업장(1만t 이상을 검토)을 보유하는 법인이며 배출범위 설정은 각 사업자의 과거의 배출 감축 노력이나 이후 도입 가능한 기술의 내용이나 정도 등 감축 잠재량을 근거로 하였다.

규제대상 가스는 우선 국내 온실가스의 약 95%를

13) 이에 대해서는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지구환경부회/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소위원회(2010)를 참조.

차지하고 있는 CO₂이며 CO₂ 중에서도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원 CO₂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폐기물의 소각이나 제품의 제조과정 시 발생하는 비에너지 기원 CO₂는 데이터의 산정·검증·보고 체계가 정비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였다. 또 온난화계수가 높은 기타 가스는 데이터의 정밀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제도대상은 우선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는 관점에

서 배출량의 산정·검증·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데이터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배출량의 상각 의무를 준수시키는 의미에서 사업자(기업) 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제도대상이 되는 배출량의 기준치는 현재 지구온난화대책법의 산정 공표 제도에서는 기준치가 3,000tCO₂¹⁴⁾인데 이것을 10,000tCO₂로 올릴 경우 대상 사업장은 4,251개소로 크게 줄어들지만, 국가 인벤토리에 차지하는 비율

〈표 4〉 한국과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비교(2010년의 안)

항목	한국	일본
제도책정·심의·조정기관	• 배출할당위원회(20명 이상) - 배출권거래제도 법안명시	• 불명
목표달성방법	• 캡앤트레이드방식	• 환경성: 캡앤트레이드방식 • 경제산업성: 상향식방식
제도의무대상자, 대상가스	• 대량배출자 • 온실가스(6가스)	• 대량배출자(1만t/년 이상을 검토) • 당면 에너지 기원 CO ₂ - 비에너지기원 CO ₂ 에 대해서는 정도관리가 가능한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 - 그 외 가스에 대해서는 당면보류
대상기간과 배출권 설정	• 제1차(2013.1.1~2015.12.31): 90% 이상 무상 • 제2차(2015.1.1~5년간): 별도결정 • 제3차(2022.1.1~5년간): 모두 유상	• 2013.4.1부터 3년마다 설정 • 2020년 이후는 5년마다 설정 • 무상 설정(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경매, 원단위방식을 고려
전력	• 직·간접등 구체적인 방법은 미정	• 「전력 간접+ 총량방식(무상 설정)+전력 원단위규제」를 기초로 하면서 다른 방식의 이점을 병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검토
국제경쟁력 배려	•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 고려 등 국제경쟁력조치 있음	• 국제경쟁력조치 배려 있음
비용완화와 조치	• बैं킹, 차입, 제한적 오프셋 인정	• 한국과 같음
벌칙 그 외	• 제도위반시의 벌칙금 5,000만원 이하, 배출권시장 가격의 5배까지 • 국제링크의 필요성 언급	• 지방과의 관계는 기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 영향이 없도록 고려

자료: 양국 환경부 및 환경성의 제도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은 39.3%(전력 직접방식)로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10,000tCO₂ 이상 배출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였다(〈표 5〉 참조).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 경매, 원단위방식의 모두를 고려하였다. 우선 무상할당에 있어서는 그랜드파더링과 벤치마크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안에서 벤치마크 설정을 할 수 있는 제조 라인에는 벤치마크 방식으로 배출권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설정이 부적당한 제조 라인이나 공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그랜드파더링 방식으로 배출권을 설정하는 등 양쪽을 조합시켜서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또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도대상 뿐만 아니라 거래 참가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입찰 방법이나 낙찰 방법, 정보공개 범위, 경매 수입의 용도 등도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원단위방식을 채용할 경우에는 원단위는 BAT(Best Available Technology)를 기본으로 하면서 설비 갱신시기 등의 개별 사정을 고려로 해서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원단위방식과 총량방식의 병존은 총량 감축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대상간의 공평성의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피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력의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전력수요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원단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 간접+총량방식(무상 설정)+전력 원단위규제」를 기초로 하면서 다른 방식의 이점을 병합하도록 하였다. 국제 경쟁력에 대한 배려와 감축 비용 부담 완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다. 외부 크레디트의 활용의 경우 일정한 신뢰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정한 양적 제한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 5〉 배출 규모별 대상 사업장 수 및 국가 인벤토리(inventory) 점유 비율

배출규모 tCO ₂	전력 간접방식				전력 직접방식			
	보고 사업장수	에너지기원 CO ₂ (특정 사업자)			보고 사업장수	에너지기원 CO ₂ (특정 사업자)		
		배출량 (tCO ₂)	산정제도에 차지하는 비율	국가 인벤토리 점유비율		배출량 (tCO ₂)	산정제도에 차지하는 비율	국가 인벤토리 점유비율
3,000	12,934	4억 9,457만	99.3%	43.4%	4,632	7억 1,676만	98.4%	63.0%
10,000	4,251	4억 4,798만	89.9%	39.3%	1,686	7억 130만	96.3%	61.6%
25,000	1,759	4억 1,003만	82.3%	36.0%	909	6억 8,952만	94.6%	60.6%
50,000	976	3억 8,268만	76.8%	33.6%	588	6억 7,818만	93.0%	59.6%
100,000	540	3억 5,272만	70.8%	31.0%	409	6억 6,550만	91.3%	58.5%

자료: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산정 공표 제도관련 자료.

14) 원유환산 에너지 사용량은 약 1, 500kℓ 이며 12,934개소가 해당. 국가 인벤토리에 차지하는 비율은 43.4%(전력 직접방식).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은 국내의 배출 감축에 공헌하는 제품에 대한 배려이다. 기능면에서 대체가능한 동종 제품에 비교하여 사용 시의 배출이 상당히 적고 또는 배출을 상당 정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최종제품, 즉 고효율가전, 에코카,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해서는 그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종래의 제품보다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차분을 배출권으로서 추가 교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였다(그림 2 참조).

그런데 경제산업성은 이상과 같은 환경성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산업성 소속의 산업구조심의회/지구환경소위원회/정책수법 워킹그룹(2010년)의 안에 의하면, 강제적인 배출권의 할당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기업이 기술도입 여지 등을 보아 자주적인 신청에 근거해 감축 목표(총량 혹은 원단위)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주장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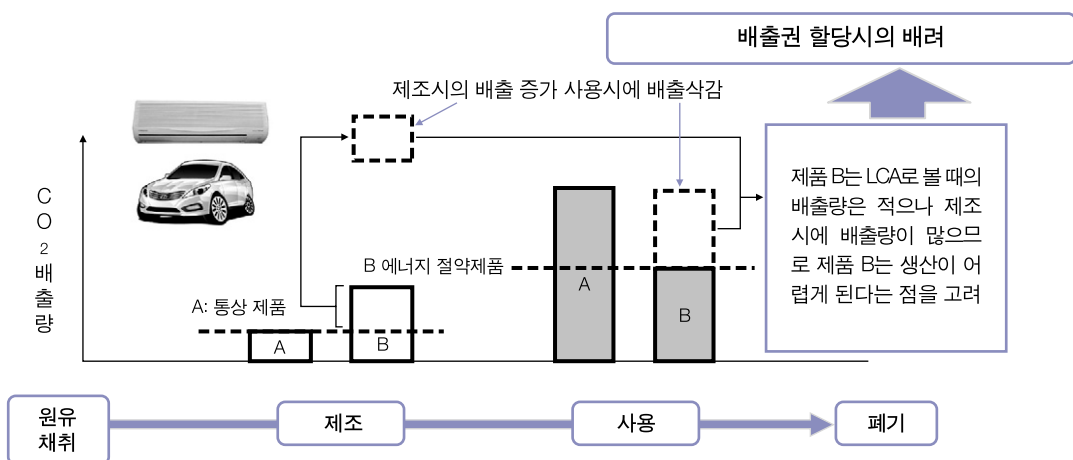
이상의 한일 양국의 배출권제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 및 할당 등 주된 사항을 책정, 심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지만, 일본의 경우는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제도의 근간이 되는 배출권할당의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성의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과 경제산업성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도 전경련의 반대와 지식경제부의 신중론이 있었지만 <표 3>과 같은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안이 2010년 11월에 입법 예고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보류할 방침이 굳어지고 나서 한국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관한 신중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전경련을 비롯한 한국의 산업계는 일본의 시행 보류 방침을 들어 한국에서도 산업경쟁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015년 시행 방침도 철회할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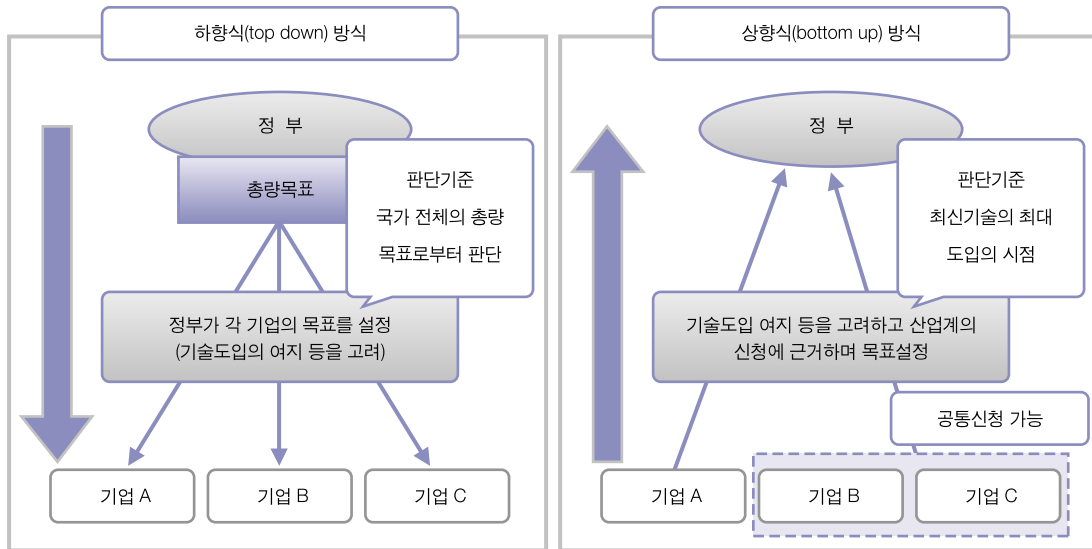
[그림 2]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배출량의 배려 이미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3] 하향식(top 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비교



자료: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지구환경소위원회/정책수법위킹그룹(2010)

주장했다.¹⁵⁾ 또 이상엽(2011)과 같은 연구자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에너지시장의 자유화와 배출권거래 시장을 연동시키면서 에너지시장의 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한 뒤에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논의가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7일,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에 받아들여서 적절한 시기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당초 입법 예고안은 철회되어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인 형식으로 2011년 4월에 재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큰 변경 사항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된 것이다. 산업계는 당초 2013년 1월 1일 시행안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크게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이 수정안에서는 받아들여졌다. 특징적인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배출권할당위원회」에 대한 조항이다. 위원회의 멤버 구성은 변경 전과 다르지 않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변경 전에는 특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변경 후에는 「기획재정부」의 각료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와 재정을 통괄하는 소관부처 각료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디까지나 국

15) 자세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웹 사이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문제점과 과제」(경제지론 231호)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Opinion/List.aspx>를 참조.

가의 경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함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한일의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와 배출권 거래제도

한국에서 기후변화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또 단기간에 배출권거래제도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배경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범부처적인 기후변화정책의 거버넌스가 확립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까지 부처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정책입안의 경향이 있었던 것을 부처의 울타리를 넘은 논의와 국가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입안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되었다.¹⁶⁾

그러나 재입법 예고에 이르기까지 배출권거래법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산업계의 의견이 중시되어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새로운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의 성립에 의해 합의 형성이나 정책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있지만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이념 및 내부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¹⁷⁾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정책이 국제적인 교섭내용이나 경제상황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책이 변화할 수는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 정책마저도 변화하는 것은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항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거버넌스의 이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 NGO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는 통합적 기후변화관련 정책 거버넌스 기구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앞서서와 같이 기후변화 정책을 신속히 심의·조정, 결정하는 범부처적인 거버넌스 기구의 부재에 의해 정책방향 자체에 대한 혼선이 노정되었다. 일본도 수상자문기구인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각료위원회나 그 아래에 지식인회의(태스크포스)를 두고 있지만, 부처 간의 이해를 초월한 국가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¹⁸⁾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그림 3]과 같은 환경성의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과 경제산업성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서서 정부 단일안의 성립이 매우 어려웠다.

또 일본의 경우 토야호(洞爺湖) 서밋(summit) 직전에 후쿠다(福田) 전 수상이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적인 실시에 관한 발언을 하고나서 한 번의 정권교체와 3번의 수상 교체가 있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등 3개의 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국회

16) 다만 동 위원회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 역행되는 에너지 다소비형 대규모공공 사업관련 정책을 진척시키고 있다고 학계나 환경 NGO 등으로부터의 비판도 많이 받고 있음.

17)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김정혜 외(2009) 등을 참조.

18) 각료위원회는 2009년 9월에 성립한 민주당 연립정권하에서 도입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내각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수상을 포함한 관계 각료가 협의하여 종합 조정을 실시함. 다만 위원회의 멤버는 각 부처를 대표하게 되므로 소속되는 부처의 이익에 맞지 않은 발언이나 의견 조정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의 심의 도중에 폐안이 되거나 성립에 이르지 못한 것도 정치 리더십의 불안정과 법적 근거에 근거한 거버넌스 기구의 부재가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의 경합 관계가 많아진 한일 양국 간에는 제도의 공동 설계와 공동 운영, 공동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조·연계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환경부처의 기후변화정책 담당자들 간의 정책간담회가 한해에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지만 의견 교환에 머무르는 친목적인 회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¹⁹⁾ 이러한 간담회를 법적 구속력에 있는 기구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아시아의 저탄소경제 정책에 관한 양쪽이 진지한 논의와 정책협력의 장소로서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에서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명시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성립이 일본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 법안이 입법 예고된 후에 일본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실시의 보류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당초의 입법 예고안으로부터 상당히 완화된 안(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안)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법안이 재입법 예고되었다. 즉 한국 산업계는 일본에서의 제도 보류를 들고 나와 재입법 예고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연쇄는 향후 양국의 정책협력 없는 기후변화정책의 실시는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중에서 일본은 탄소세를 선택하게 되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하면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도(100% 유상할당의 경우)이든 어느 쪽의 정책도 경제효과는 같다. 다만 현실에서는 양쪽 제도의 대상은 탄소세의 경우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배출권거래제도는 거래비용 때문에 일부 대량 배출자(대부분이 대기업)에 한정된다. 또한 탄소세의 경우 탄소세에 의한 세입이 에너지집약기업이나 관련 제품보급을 위한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이 대량 배출자를 지원하게 되므로 오염자부담 원칙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²⁰⁾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선택되지 않고 탄소세가 선택되는 것은 결국 산업계(즉, 일본경단련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혹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는 의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향후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의 장래 산업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강한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공정한 거버넌스 기구 구축이 과제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앞서서 국회 제출된 캡 앤드 트

19) 2011년 6월 20일에 필자가 일본 환경성 시장메카니즘실의 담당자와의 인터뷰조사 결과에 의함.

20) 실제로 일본의 환경성은 저율의 탄소세와 그 세수입의 일부를 저탄소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조정형 탄소세제를 제안하고 있음.

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안도 2010년 12월에 일본의 제도 실시 보류 방침이 전해지고 나서 입법 예고된 정부안을 철회하고 산업계를 많이 배려한 제도안의 재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의 순서를 밝혔다. 또 산업계는 일본 배출권거래 제도의 시행안이 보류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재입법되었던 제도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없다.²¹⁾

일본 정부가 실시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저율의 탄소세²²⁾로는 경제주체에 배출 억제 의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고 결국 그 세입을 저탄소 산업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소기업과 시민)가 강자(대기업 등 대량 배출자)를 지원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면이 있다.²³⁾ 경제주체가 널리 알개 부담하는 저율의 탄소세는 어나운스먼트 효과도 있어서 실시의 의의는 크지만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대량 배출자에게 강력한 감축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의의는 높다.

물론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도에 의한 추가적인 탄소 비용의 부담은 정치적으로도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²⁴⁾ 배출권거래제도는 제도 참가 주체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의 저탄소화와 제품의 저탄소화로 연결되어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의해 에너지집약산업의 탄소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시점과 기술 혁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비용의 절약과 제품경쟁력의 향상이 실현되는 시점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어, 그 시차를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계수에 근거한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 등 국경세 조정을 실시하거나 저율의 탄소세와의 정책조합을 통해 에너지집약기업에 대하여 탄소세입을 저탄소 보조금으로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조금이 오염자부담 원칙에 벗어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다양한 기후변화대책 관련법안²⁵⁾에서는 자국 상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의 수입상품에는 2020년부터 배출권구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EU에 있어서도 2005년에 이미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는 탄소세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EU-ETS의 제3기(2013~2020년)부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하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국에서 탄소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품이 이런 지역에 수

21)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구조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도 크게 변경되는 예가 많아 차기대통령의 임기인 2015년에 행정부로 제안된 배출권거래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음.

22) 2011년 10월부터 시행의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톤당 약 300엔의 규모가 되어 원유·석유 제품은 약 790엔/kl, LPG 약 910엔/톤, LNG 약 810엔/톤, 그리고 석탄 약 700엔/톤이 부과됨. 이 세에 의한 조세 수입은 약 2,400억엔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세율은 향후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질 예정임. 다만, 본고의 모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정부 내의 절차가 늦어 2011년도 중 시행될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음.

23) 환경성(2010)의 시산에 의하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각 주체별로 세부담 비율은 산업 20%, 에너지 전환부문 15%, 민생 39%, 수송 15%으로 민생부문의 부담이 가장 큼.

24) 예를 들어 한국 최대의 철강 메이커인 POSCO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연간 6,300만 톤(2009년 실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탄소 코스트 부담이 된다」고 함.

25) 예를 들어 Lieberman-Warner Bill, Waxman-Markey Bill, Kerry-Boxer Bill, Carbon Limits and Energy for America's Renewal Act of 2009, Kerry-Lieberman Bill 등을 들 수 있음.



출될 경우에는 국경에서 탄소비용의 지불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²⁶⁾ OECD 가맹국이며 아시아의 선진 공업국인 한일 양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국제 공헌을 해야 하는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국경세 조치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산업의 경합 관계가 많아진 한일 양국에서는 어느 일방에서만 산업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정책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있어 양국의 정책 협조와 탄소시장의 공동창설 등도 앞으로 양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일의 기후변화정책 연계와 배출권시장의 공동 창설은 향후 아시아의 배출권거래 시장의 성립과 관련 비즈니스의 창출, 그리고 아시아지역을 저탄소경제의 길로 인도해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김정혜 외(2009), 「기후변동대책을 위한 정부 기능의 재구축」, 한국행정연구원.
- 녹색성장위원회(2009),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 목표 설정」
- 녹색성장위원회(201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법률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녹색성장위원회 웹 사이트(<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 이상엽(201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상황 점검」, 제15회 국가탄소시장연구회 정기포럼 보고자료, 2011.5.31
- 이수철(2010), “일본의 온난화 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성과와 과제,” 「환경정책학연구」, 제9권 제4호, 77-102
- 전국경제인연합회(20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문제점과 과제」(경제 지론 31호).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Opinion/List.aspx>.
- 조용손(2008),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음양 방법에 관한 연구」국무총리실.
- 지식경제부(각년도), 지식경제백서
- 지식경제부(200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9), 「자주적 온실가스 삭감 프로그램」
- 환경부(각년도), 「환경백서」
- 환경부(2009), 「지역단위 배출권거래 시행 사업」
-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201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 ### 〈외국 문헌〉
- 李秀澈(2009), “韓國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と低炭素綠色成長戰略,” 「環境經營學會誌」, 第9卷 第1号, 1-17頁
- 環境省各年度版, 「環境白書」
- 環境省(2002), 「京都メカニズム(CDM, JI, 排出權取

26) 물론 수입상품에 대한 탄소코스트 부과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쉽게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引)の實施に係る支援メニュー(2003年度施策)」
環境省(2010),「地球温暖化対策税について」
環境省英文ウェブサイト(<http://www.env.go.jp/en/>)
環境省市場メカニズム室(2011),「韓国「温室効果ガス
排出権取引制度に関する法律(案)」の再立法予
告について」.

[http://www.env.go.jp/earth/ondanka/det/os-](http://www.env.go.jp/earth/ondanka/det/os-info/mats/kr20110331.pdf)
[info/mats/kr20110331.pdf](http://www.env.go.jp/earth/ondanka/det/os-info/mats/kr20110331.pdf)

環境省/排出権取引に関わる制度設計検討会(2000),
「国内排出権取引案」

環境省/中央環境審議会/地球環境部会/国内排出
権取引制度小委員会(2010),「我が国における
国内排出権取引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案)」.
気候ネットワーク(2010),「国内排出権取引制
度小委員会での意見」([http://www.env.](http://www.env.go.jp/council/06earth/y0610-02/ext01.pdf)
[go.jp/council/06earth/y0610-](http://www.env.go.jp/council/06earth/y0610-02/ext01.pdf)
[02/ext01.pdf](http://www.env.go.jp/council/06earth/y0610-02/ext01.pdf))

経済産業省(2009),「試行排出権取引スキーム2008年
度目標設定参加者実績等について」([http://](http://www.env.go.jp/earth/ondanka/det/dim/trial/result-fy08_0912.pdf)
[www.env.go.jp/earth/ondanka/det/dim/](http://www.env.go.jp/earth/ondanka/det/dim/trial/result-fy08_0912.pdf)
[trial/result-fy08_0912.pdf](http://www.env.go.jp/earth/ondanka/det/dim/trial/result-fy08_0912.pdf))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地球環境小委員会/
政策手法ワーキンググループ(2010),「ボトム
アップ方式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につ
いて」([http://www.meti.go.jp/committee/](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672/008_05_00.pdf)
[summary/0004672/008_05_00.pdf](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672/008_05_00.pdf))

中央環境審議会/国内排出権取引制度小委員会
(2010),「我が国における国内排出権取引制度
の在り方について(案)」

内閣府(各年度版),「経済財政白書」

日本経団連のウェブサイト([http://www.kkc.](http://www.kkc.or.jp/ondanka/thought/page5-1.html)

[or.jp/ondanka/thought/page5-1.html](http://www.kkc.or.jp/ondanka/thought/page5-1.html))

諸富徹・鮎川ゆりか(2007),「脱炭素社会と排出量取
引 国内排出量取引を中心としたポリシー・ミ
ックス」,日本評論社

Sunjin YUN, 李秀澈, 羅星仁(2010),「日韓の温暖化
政策と環境ガバナンス」,日本環境経済・政策
学会, 2010年度 大会提出論文